

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3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②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③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④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⑤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
【별 첨】

관련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-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년 7월 18일
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7월 2일
3. 상 정 일 자 :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5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7. 18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 권혁돈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희배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부칙으로 「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」 등 5개의 다른 조례 인용조문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 론 요 지 : 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VI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